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65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	3. C
	4. D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5. 11. 3. 선고 2014구합2992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5. 13.
판 결 선 고	2016. 5. 27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12. 10.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,713,60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30

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 및 2014. 12. 15. 원고 B, C, D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11,600,28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① 제3면 12행 "뿐이고," 다음에 "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도 없으므로"를 추가한다.

② 제5면 1행 "해석되고," 다음에 "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(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)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"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30

재판장 판사 김필곤

판사 손삼락

판사 김용하